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본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① 이용 계약은 본 센터와 이용자 간의 약속이며, 이용자(보호자)는 본 센터 이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센터의 요청에 최대한 응해야 하며, 본 센터는 이용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등급자를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 이용이 허가된 자에 대한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에 당해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1일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① 월 이용료
 - 1) 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정부 고시가의 일반 15%, 경감대상 9% 또는 6%, 기초수급권자 0%를 받는다.
 - 2) 비급여
 - 가. 식재료비 및 간식비
식사 1끼당 2,500원(식재료비 한끼당 :2,500원, 간식 일 2회:1,000원)을 받는다.
-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2) 기타 개인 소모품(기저귀 등) 및 별도 병원 치료비용은 이용자가 추가 부담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

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2)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3)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4)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5)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월 이용료 등의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2)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3)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센터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 4) 기타 센터 생활 규칙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이용계약의 해제는 다음의 경우 가능하다.

① 이용자의 해제

-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2) 제공자가 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용자와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계약 해제 시에는 제공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공자의 해제

-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2) 이용자가 장기요양 등급 외자로 변경된 경우
-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4) 이용자 자신 및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
- 5)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공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